

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[2011. 10. 7]

조례 제389호

일부개정 2013. 11. 8 조례 제 501호
일부개정 2017. 5. 12 조례 제 741호
일부개정 2017. 9. 8 조례 제 766호
일부개정 2020. 12. 29 조례 제 958호
일부개정 2023. 7. 28 조례 제1099호
(만 나이 개정 및 「정부조직법」 개편에 따른 「증평군
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독립유공자는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7. 5. 12, 2020. 12. 29>

1. 순국선열: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서, 그 공로로 건국훈장·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
2. 애국지사: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, 그 공로로 건국훈장·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

② “유족”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7. 5. 12, 2020. 12. 29, 2023. 7. 28>

제3조(지원 사업)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. <개정 2013. 11. 8, 2017. 5. 12, 2020. 12. 29>

1. 보훈명예수당: 월 15만원
2.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

증평균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

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지원 대상자)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증평균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. <개정 2017. 5. 12, 2023. 7. 28>

제5조(지급 방법 및 시기)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5. 12>

②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

③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(토요일,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)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. 다만, 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④ 신청서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는 첨부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 대상자의 결정)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5. 12>

②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매년 1월중에 적격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5. 12, 2020. 12. 29>

③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국가보훈부 충북북부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5. 12, 2023. 7. 28>

제7조(신청 사항 변경)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5. 12>

1. 주소가 변경된 때

2.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조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29>

1. 삭제 <2020. 12. 29>

2. 삭제 <2020. 12. 29>

3. 삭제 <2020. 12. 29>

제8조(지급 중지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.

1. 지급 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
2.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

제9조(환수 조치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5. 12>

1.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

2.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지급 대상자 사망 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3. 11. 8 조례 제501호)

이 조례는 공포 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 5. 12 조례 제74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 9. 8 조례 제766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. 12. 29 조례 제958호)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증평균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

부칙(2023. 7. 28 조례 제1099호, 만 나이 개정 및 「정부조직법」 개편에
따른 「증평균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